

의안번호	2206439
의 퇴 인	안호영의원
회 답 일	2024.12.30.
추계번호	24D587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	사회재난의 범위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경우,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매뉴얼 개발 및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 근거하여 사회재난으로 정의되는 경우, 재정소요 항목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대응 등을 반영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(제22조, 제71조의2 등),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예·경보 체계구축(제38조의2), 방사능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(제66조) 등을 고려할 수 있음

- 다만, 현행법에 근거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방사능 오염사고 관련 예방 및 대응, 방사능 물질의 해양 유출 관련 연구개발, 지원 등이 일부 수행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기존 사업의 내용 및 범위, 신규 사업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행정안전부의 ‘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’ 사업은 재난원인조사단(반) 운영과 주요재난·사고의 객관적인 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등을 하고 재난원인조사분야별 23개 국가재난조사기관 협의회 기관(방사능사고의 경우, 원자력안전위원회) 간 협업 체계 지속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 예산 기준 9억 5,500만원 편성
 - 해양수산부의 ‘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·예측기술개발(R&D)’ 사업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물질의 해양 유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측범위를 기존의 북(서)태평양에서 전지구 해수 순환 기반으로 확대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해양방사능에 대한 신속한 영향예측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2024년 예산 기준 61억원 편성
 - 또한, 현행법에 따라 이미 지원하고 있는 구호금, 주택피해지원, 생계지원비 등과 구분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, 지원항목, 항목별 지원금 등이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 이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